

조문 별 제·개정 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

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

◇ 제 · 개정 이유

「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」과 「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」로 구분하여 수신기를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형식승인 소방용품으로 한정하고 간이형수신기를 성능인증 소방용품으로 전환하여 기술기준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◇ 주요내용

- 가. 「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」중 간이형수신기 관련 기준을 성능인증 기준으로 전환
- 나. 간이형수신기 기술기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 (안 제2조)
- 다. 간이형수신기 구조 및 성능시험 기준 등을 규정함 (안 제3조 ~ 제22조)
- 라. 간이형수신기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 (안 제23조)